

[일련번호 : 1]

# 경 기 도 체 육 회

## 시 정 요 구

[제 목] 협회 경영공시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볼링협회

[내 용]

경기도볼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볼링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정」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3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56조(경영공시)에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협회는 감사기간 내(\*\*\*\*.\*\*.\*\*~\*\*) 확인해본 결과 「규정」 제46조에 따른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동 「규정」 제56조의 공시항목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결과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볼링협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규정」 제56조에(경영공시)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기도볼링협회장은

가. 협회 「규정」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에 따라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조속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협회 「규정」 제56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 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 기 도 체 육 회

### 시 정 요 구

[제 목] 규정 제·개정 의 행정절차 및 규정중복 등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볼링협회

[내 용]

경기도볼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볼링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가입·탈퇴 규정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에 따라 본회의 ‘규약’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협회 「규정」 제14조(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에 의거 협회 제 규정의 제·개정은 스포츠평정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 심의·의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협회 는 스포츠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결로 제 규정의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 규정의 제·개정 일자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표 1] 경기도볼링협회 규정 제14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규정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②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b>규정의 제정 및 개정</b>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①위원회는 본회 규정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b>본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b> 2.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9. “생략”

②협회의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기력향상위원회, 경기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 중복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경기운영위원회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중복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인사위원회 규정과 규약에 별도 조항으로 제정되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와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그렇게 규정되어있지 않다.

③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시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나 일부 불필요한 조항까지 삽입하여 제정하였다. 동 「규정」 제4장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 예외인정 심의」의 「제17조(심의 대상)」에서 「제21조(세부사항)까지」의 조항은 상위단체인 본회가 경기

도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제한 및 인정 등의 심의에 관한 내용으로 협회 규정상 맞지 않다.

④협회 「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1항은 협회의 규정과 본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 본회의 규정을 따르는 조항이다. 하지만 협회는 협회와 본회의 용어를 혼용 사용하여 그 의미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경기도볼링협회 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현재 규정	규정 개정(안)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이 규정은 본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회의 규약을 <u>이 규정</u> 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과 <u>이 규정</u> 이 상이할 경우에는 <u>이 규정</u> 을 따라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이 규정은 본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회의 규약을 <u>체육회 규정</u> 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과 <u>체육회 규정</u> 이 상이할 경우에는 <u>체육회 규정</u> 을 따라야 한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볼링협회는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행정절차 및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하여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추후 미흡한 규정을 정상적인 제·개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볼링협회장은**

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에 의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 반드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심의·의결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제·개정 일자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협회 규정 제53조(규정 제·개정)에 의거 협회 규약의 변경(개정), 중복규정의 병합 또는 삭제, 각종 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구분 및 운영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여 협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 기 도 체 육 회

### 개 선 요 구

[제 목]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소 속 기 관] 경기도볼링협회

[내 용]

경기도볼링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사무국은 회장, 사무국장, 직원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년부터 현재까지 상시 근로 중이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협회는 사무국 직원 \*명과 고용관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계, 사업 등 전반을 관장하는 직원인 사무국장의 고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노사 분쟁 발생 시 책임의 문제 등 노사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없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불링협회장은

기본적인 근로관계 규정을 이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국장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 기 도 체 육 회

## 권 고 요 구

[제 목] 재정보증 미가입 및 회계절차·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불링협회

[내 용]

경기도불링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불링협회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불링협회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경 불협은 회계업무 수행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회계 규정」 제45조(보칙)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관련

본회 「회계 규정」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회계관계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위임전결내규」에 따라 예산집행의 전결권을 담당 직원, 사무국장, 회장에게 부여하고 이에 따라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담당 직원과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회계절차 및 관리 미흡 관련

본회 「회계 규정」 제12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매회계연도의 일체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있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4조(예산편성 지침) 3항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기능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협회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회계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별로 구분된 수입과 지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협회가 편성한 예산서의 세출예산으로는 어떤 재원을 어떠한 예산과목으로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는 결산서 또한 어떤 예산을 어떠한 예산 과목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금전출납부, 세입부, 세출부 등의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불링협회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의 현실적(재정)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가입을 검토하였으며, 협회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불링협회장은

가. 회계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예산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나. 협회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 및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회계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경영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회계관리시스템(전산) 도입 또는 수기회계장부(엑셀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정기적인 회계 교육을 통하여 협회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